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8. 3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973

I. 조례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 8. 7.
- 다. 회부일 : 2018. 8.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규모 : 지하 3층, 지하 5층(대지 6,488㎡, 연면적 22,519㎡)
 - 지원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위치도



건물현황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주요 사업

- 여성, 가족, 보육, 돌봄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돌봄 지원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3) '20년 소요예산(안) : 14,506,490천원

(4) '20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6,912,144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7,594,346천원

(5)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서울 가족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함)’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로서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임.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28호, 2019. 7. 18., 일부개정]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u>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

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이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존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고 예산 심의에 앞선 예산편성 단계에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된 것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임.
- 한편, '19년 6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 또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는데, 본 동의안에는 개정 조례에서 명시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2 여성가족재단 설립개요 및 운영현황

-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가족재단조례」”라 함)를 근거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02년 설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운영되고 있음.

- 「여성가족재단조례」에 따르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사업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사업 및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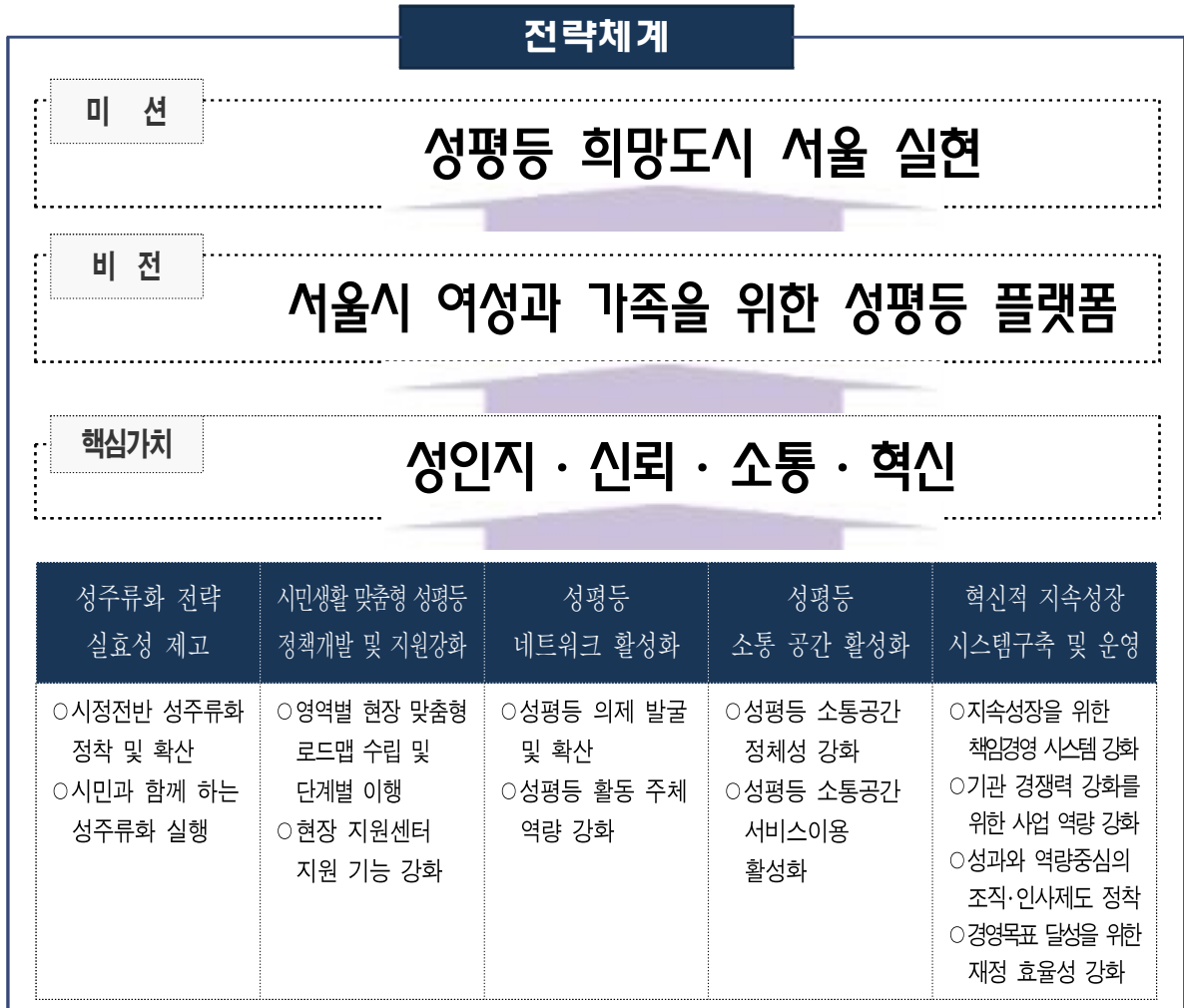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03호, 2018.1.4., 일부개정]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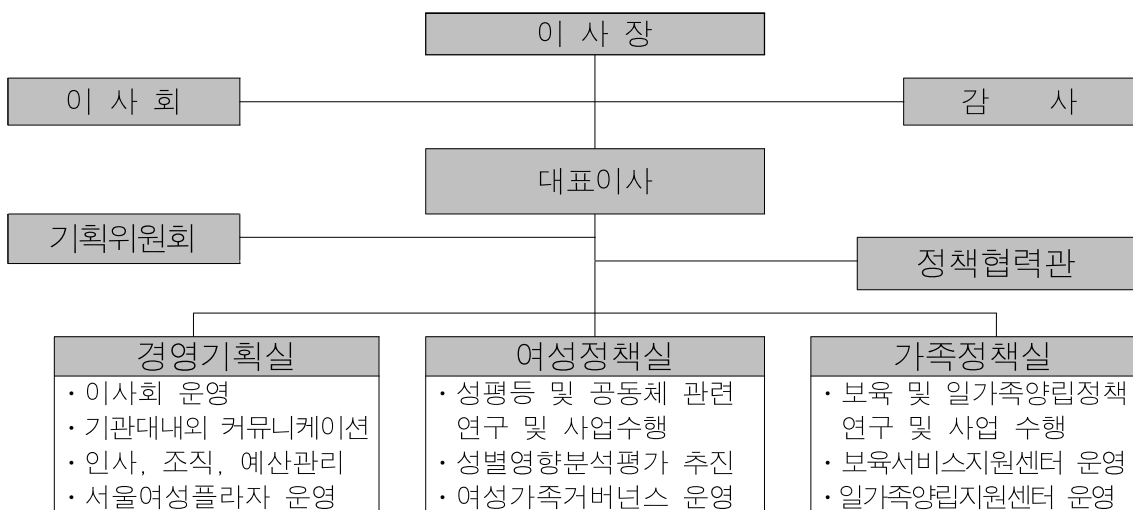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10.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2019년 8월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제시한 기관 운영 미션과 비전체계(<그림 1> 참조), 조직 및 인력(<그림 2>, <표 1> 참조), 주요시설 현황(<표 2>, <표 3> 참조), 예산 현황(<표 4> 참조), 최근 3년간 운영 실적(<표 5> 참조)은 다음과 같음.

<그림 1. 미션과 비전>



<그림 2. 조직 : 3실>



〈표 1. 인 력 : 정원 114명/ 현원 112명〉

(단위 : 명)

구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정원	114	1	2	5	27	24	15	7	33
현원	112	1	0	3	28	21	13	13	33

※ 2019.6.5. 기준

〈표 2. 시설개요〉

구분	주요내용
위 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면 적	대지6,488 m^2 , 건축 연면적 22,519 m^2
규 모	지하 3층, 지상 5층
건립기간	1999. 11 ~ 2002. 6

〈표 3. 주요시설〉

구분	주요시설
대관공간	시청각실, 다목적실, 대식당, 세미나실, 회의실, 국제회의장, 아트홀 봄 등
여성가족 사무 및 정책 공간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NGO 공간임대, 성평등 도서관 등
편의시설	시간제보육, 스포츠센터, 수영장, 주차장 등

〈표 4. 2019년 예산〉

- 수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비율)	2018(비율)	증감(증감율)
계	13,111(100%)	11,782(100%)	1,329(10.1%)
출 연 금	8,901(67.9%)	7,113(60.4%)	1,788(20.1%)
자 체 수 입	4,210(32.1%)	4,669(39.6%)	△459(△10.9%)
사업운영수입	8(0.1%)	8(0.1%)	0.0%
시설운영수입	1,947(14.8%)	1,967(16.7%)	△20(△1.0%)
기 타 수 입	808(6.2%)	788(6.7%)	20(2.5%)
이월 잉여금	189(1.4%)	30(0.3%)	159(84.1%)
기본재산	-	927(7.9%)	△927(△100.0%)
대행사업수입	1,258(9.6%)	949(8.1%)	309(24.6%)

- 지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비율)	2018(비율)	증감(증감율)	비고
계	13,111(100%)	11,782(100%)	1,329(10.1%)	
사업예산	5,563(42.4%)	4,839(41.1%)	724(13.0%)	·현장맞춤형 여성정책개발 및 사업운영 ·현장맞춤형 가족정책개발 및 사업운영 ·공간운영 및 경영관리
일반관리비	7,548(57.6%)	6,943(58.9%)	605(8.0%)	·행정운영경비 : 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표 5.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2,237건	2,892건	3,288건
	성주류화정책 지원 역량 강화	9,728명	10,961명	20,161명
	성인지 콘텐츠 개발	5건	6건	9건
시민생활 맞춤형 성평등 정책개발 및 지원강화	여성가족 맞춤형 선제적 정책연구 (기본과제·수탁과제·젠더브리프)	34개	41개	49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컨설팅 및 인식개선 노력	420건	420건	440건
	안심보육환경 조성 위한 컨설팅	2,466건	2,645건	2,995건
	보육교사 역량강화 및 돌봄 콘텐츠 개발	2,576명 2건	2,322명 3건	2,796명 4건
	시민소통 활성화	40회	50회	62회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네트워크 협력 연계	90기관	108기관	168기관
	성평등 네트워크 참여기관 활성화	99기관	119기관	143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9회	56회	68회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성평등 소통공간 프로그램 운영	12회	12회	15회

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최근 5년 간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한 예산규모는 총 306억원으로, 한해 평균 61억 원('15년~19년, 5년 평균) 정도임인 바, 재단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시 출연금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절반정도인 49%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여성가족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비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15	12,389	4,890	39.5	4.3
2016	12,152	5,259	43.3	7.5
2017	12,970	4,417	34.1	△16.0
2018	11,782	7,113	60.4	61.0
2019	13,111	8,901	67.9	25.1
총액	62,404	30,580	49.0	-
평균	12,481	6,116	49.0	-

-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²⁾과 「여성가족재단조례」³⁾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바,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하건데, 여성가족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고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동 재단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며,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보면, 여성가족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성평등 전문기관으로,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연구와 관련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또 서울시의 여성 및 가족, 보육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재단 출연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영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지정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기금 및 출연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